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소청당사자(소청인, 피소청인)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1. 23. ~ 1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① 위원회는 위원,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, 이 항에서 “출석자”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·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,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, 회의 내용 ·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8조의2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① 위원회는 위원,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, 이 항에서 “출석자”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·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,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, 회의 내용 ·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816